

###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05월 10일

양강면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**	이** 1990-09-07	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로	거주불명등록이전 2021-05-10